

문서번호	유시티추진담당관-104369
보존기간	
결재일자	2011.7.25.
공개여부	비공개(5)
방침번호	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1호

주무관	유시티추진담당관	정보화기획단장	행정1부시장	서울특별시장
협 조 행정2부시장 예산담당관 재정비2과장 u-정책팀장				

시민의 행복한 서울!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!

첨단도시 은평 u-City 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



해치서울
2011. 7.

정보화기획단
(유시티추진 담당관)

첨단도시 은평 u-City 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

- 은평 u-City사업은 서울시 최고의 유비쿼터스 주거공간 구현을 위해, 우리시가 주도했던 사업으로, 현재 법적 준공절차를 앞두고 있으며,
- u-City 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와 초기 u-City 사업의 성공모델 정착을 위하여, 관리청을 은평구로 정하고, 이에 따른 市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.

I | 사업개요

□ 일반현황

- 위 치 : 은평구 진관내 · 외동, 구파발동 일원
- 사업주관 : 뉴타운사업2담당관(현 재정비2과) 시행사 : SH 공사
- 규 모 : 3,492,421m²
- 사업기간 : 2006. 11 ~ 2011. 03(공사착공 2008.06.11)
- 사 업 비 : 10,284백만원
- 사업내용

유비쿼터스 기반시설 구축	① u-도시통합관제센터 ② 공공정보 자가통신망
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운영	① 방범CCTV ② 불법주정차 CCTV ③ 미디어보드 ④ 첨단복합가로등 ⑤ u-위치확인 ⑥ 웹포탈 ⑦ u-라이브러리 ⑧ u-Home ⑨ u-어린이행복놀이터 ⑩ u-그린

□ 주요 추진경위

- 2005.12.07 시장지시사항 제273호(정보화도시로 뉴타운 추진)
- 2006.04.04 u-Seoul 마스터플랜(은평 u-City 선정·공포)
- 2008.06.11 법령시행 이전 착공(법/시행령 모두 '08.09.29 시행)
- 2009.01.20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인정
- 2011.04.11 준공검사 신청(SH공사→市)

II 서비스 운영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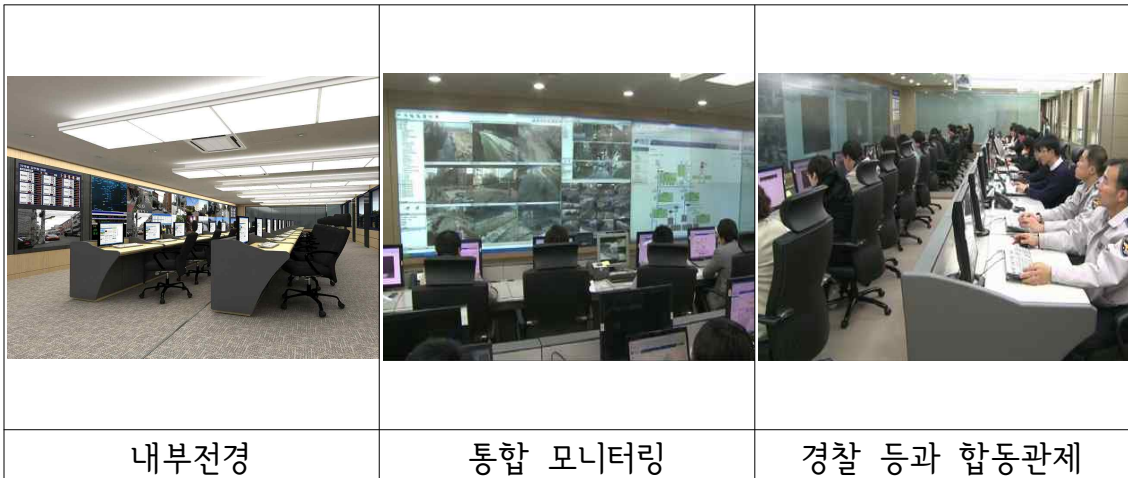
□ 2개 기반시설 10개 서비스 운영



5

□ u-도시통합관제센터(정보의 수집/가공/관제 ➡ 비상시 응급대응)

- 운영인력 : 모니터링 요원 20명, 경찰5명, 공익요원 11명 (24시간 3교대) IT 장비 유지보수 요원 3명
- 운영실적 : 범죄수사 영상제공 150회, 비상벨호출 400회 (월 평균) 위치조회 900회, 교통정보제공 150만 건 등



III | 현안과제

□ 관리청 및 운영비 부담주체 관련 입장차

현안	서울시	은평구	SH	법률자문
관리청주체	은평구	서울시	은평구	서울시
	·추진경위 등 사실적 판단에 근거	관련 법률 ¹⁾ 에 의거	·추진경위 등 사실적 판단에 근거	관련 법률 해석
운영비 부담주체	은평구	서울시	서울시	서울시
	관리청이 운영비부담	·서울시 주도사업 ·재정형편, 상징성	관련 법률에 의거	관련 법률 해석

□ 민원발생 우려(관리청 및 운영비 쟁점 미해결 시)

- 방범CCTV 영상조회 불가, 긴급 비상벨 대처 불가 등 민원발생
-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위치확인 서비스 불가로 민원우려
- u-Home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중단으로 입주주민 반발예상

IV | 현안과제 검토결과

□ 우리시가 법정관리청(준공 이전이므로, 시설물이 귀속되어 있는 상황은 아님)

- 『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』제19조에 의거

□ 우리시가 운영비 지원(아래 3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)

대안	운영비 부담주체	관리청	추진내용	고려사항
제1안	SH	은평구	· 5년간 운영비일시지급 · 市가 사후에 예산보전	· 화성·동탄 u-city 공공시설유지관리비지급 부적정 감사원지적(법적근거 없음) · 예산회계 규정상 위반
제2안	서울시 (보조금)	은평구	· 3자간 협약체결 · 예산부서 협의	· 예산지급 시기인 '12.1까지 잔여기간 동안 (7월~12월) 운영비부담 주체 선정
제3안	서울시 (재배정)	서울시	· 의회 예산심의설득 노력	

- 제1안의 경우 감사원지적사례, 예산회계 규정상 **시행 불가**
- 지역기반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, **관리청을 은평구로 지정하는 제2안 채택**

1)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제19조 : 실시계획 등에서 관리청이 정해지지 않았으며,

다른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

운영비지원 필요성

- ① 우리시 주도('05.12 시장지시 사항)로 “뉴타운을 정보화 선도 도시로 추진”
- ② 초기 u-City 사업의 성공모델 정착 및 u-City 서울의 상징성 감안
- ③ 지역기반 서비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, 관리청 지정에 따른 운영비지원
- ④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한 운영비 지원(은평구 재정자립도 29.7% (24위))

□ 시사점

- 관련 법령이 완비된 현재, 추진되는 마곡 등 기타 u-City 추진 시에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“관리청 및 운영비 부담주체”를 명확히하여 추진하여야 함

V 보조금 지원계획 (V항은 붙임의 3자간 협약내용에 반영 함)

□ 先 협의사항

- 협약체결과 동시에 현행 서울시로 정해진 관리청을 은평구로 정하고, 은평구는 이를 수용
- 市 보조금의 지급기산일이 도래하기 전('11.12)까지의 운영비는 초기 u-City 성공 모델의 정착을 위하여 SH가 부담
- ※ 위 사항에 대해서는 3자간(서울시, 은평구, SH공사)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임

□ 지원대상

- ① 유비쿼터스기반시설 2가지(u-도시통합관제센터와 공공정보통신망)와
- ②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10가지 운영에 필요한 현장시설, H/W, S/W 등

□ 지원기준

- 위 ①,②사항을 유지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보조금 지원
➡ 전기사용료 등 직접경비 제외,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장비충당금 제외
- 센터 내, 은평구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불법주정차요원 등의 인건비 제외

□ 지원금액 산정협의(정보화기획단 중재과정을 거쳐 3자간 합의완료)

차수	시기	수행자	산정금액	항 목 (단위 : 천원)	감액항목
1차	'10.11.15	SH (건국대 산학협력단 용역 수행)	14억	·운영인건비 : 727,493 ·유지보수비 : 180,103 ·직접 경비 : 43,946 ·장비충당금 : 469,103	
2차	'11.04.14	서울시	7.7억	·모니터요원 : 190,797 ·유지보수비 : 546,013 ·직접 경비 : 39,411	·장비충당금 제외 ·모니터요원 축소
3차	'11.05.11	서울시, 은평구, SH공동	5.4억	·유지보수비 : 546,013 - IT 인건비 166,073 - 장비유지보수 379,940	·모니터요원 제외 ·직접경비 제외

□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

- 매년 **5.4 억원**을 보조금으로 지원
- 지급기산일을 2012년1월1일로 하여, **5년 동안**(2016년12월31일까지) 지원
 - ※ 유지보수비에 한해 지원하므로 IT 장비의 내구연한 5년 적용
 - ※ 은평구는 서울시에 보조금의 지원금액 증액 및 지원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없도록 명시

□ 관리방안

-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정산 및 관리감독

VI | 행정사항

□ 기관(부서)별 역할

- 정보화기획단(유시티추진담당관) : 관리청 지정 및 운영비지원 등 협약사항 총괄
- 기획조정실(예산과) : 보조금지원 관련 협조
- 은평구 : 관리청 인수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사항 이행
- SH 공사 : 준공 및 협약내용 이행에 필요한 내부절차 이행

붙 임 :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의 관리운영 협약서(안) 1부.

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의 관리운영 협약서(안)

서울특별시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, 은평구청장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, SH공사 사장(이하 “병”이라 한다)은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 (목적)

이 협약서는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「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」에서 정한 관리청을 현행 “갑”에서 “을”로 정하고, 동 시설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“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(이하 “시설물”이라한다) 이라 함은 은평뉴타운지역 내에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“병”이 설치한 센터시설, 정보통신망, 현장시설,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.

제3조 (시설물의 관리청 지정)

“갑”은 이 협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현행 “갑”으로 정해진 시설물의 관리청을 “을”로 지정하며 “을”은 이를 수용 한 것으로 한다.

제4조 (운영비 지원 등)

- ① “갑”은 “을”을 시설물의 관리청으로 지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비를 지원한다.
 1. 지급기산일을 2012년1월1일 하여 5년간 지원한다.
 2. 금오억사천만원(W540,000,000)을 매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.
- ② “병”은 “갑”이 “을”에 대한 보조금지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(2011년 12월)까지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전액을 “을”에게 지원한다.

- ③ “을”은 제1항 이외에, “갑”에게 보조금의 지원기간을 연장 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운영비의 증액을 요구 할 수 없다.

제5조 (인수인계)

“병”은 인수인계 목록을 작성하여 “을”에게 제출함으로써,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.

제6조 (관계법령 등의 준수 및 협약의 해석)

- ① “갑”과 “을”과 “병”은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법규·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법규·지침은 협약체결 당시의 법규·지침으로 한다.
-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과 “병”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이를 이유로 시설물 운영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.

제7조 (협약의 효력)

-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.
- ② 이 협약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1년 7월 일

“갑”

“을”

“병”

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

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번지

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번지

서울특별시장

(인)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(인)

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

(인)